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2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이광희・민병덕・김우영

양문석 • 조계원 • 김성환

모경종 • 이상식 • 문진석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 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 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 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변경하고자"를 "변경, 해제하고자"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효력의 발생)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 국회 및 헌법기관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 ①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엄의 해제가 요구되면 계엄 효력은 즉시 상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u>변경하고자</u> 할 때에는 국무	<u>변경, 해제하고자</u>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u>심의·의결을</u>
<후단 신설>	이 경우 국무회의 규정 제6조
	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2(계엄 효력의 발생)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
	이 발생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 국회 및 헌법기관은 제
	<u>외한다.</u>
<u>②</u> ~ <u>④</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u><신 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헌법 제7
	7조제5항에 따른 계엄의 해제
	가 요구되면 계엄 효력은 즉시
	<u> 상실한다.</u>
①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대통령이 <u>제1항에</u> 따라 계	③제2항에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u>심의·의결을</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